

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

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 부재, 이사 따위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9. 25.

청 주 시 흥 덕 구 청



1. 공고기간: 2020. 9. 25. ~ 2020. 10. 15.(20일간)
2. 공고대상: 자동차 13대(붙임 참조)
3. 강제처리일: 공고기간 이후
4.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: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(☎043-270-8538)
5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 - 가. 소유주(점유자)께서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길 바라며,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(폐차 및 공고)됩니다.
 - 나.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1항 및 제 81조 제8항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~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,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~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
 - 다.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같은 법 제 88조 규정의 의거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됩니다.
 - 라. 강제처리(공매 및 폐차) 시 차량 내 모든 물품(비품)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(점유자)에게 있습니다.
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☎043-201-7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